

종 합 감 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17년 영양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17. 3.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번호	소 관	건 명	행정상 조 치		재 정 상 조 치			
			시 정	주 의	회 수	금액	감 액	금액
계		18건	7	11	1	266,211	1	203,000
1	총 무 과	정원을 초과한 승진임용 부적정		1				
2	총 무 과	근속승진자 퇴직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 임용 부적정		1				
3	새 마을경 제 과	공장설립승인 부적정	1					
4	재 무 과	일반용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 심사 소홀		1				
5	재 무 과	장기계속용역 차수별 준공실적 미인정 부적정		1				
6	민 원 봉 사 과	민원처리 지연 및 관리·감독 소홀		1				
7	보 건 소	공중보건의 관사운영비 예산집행 부적정		1				
8	농 정 과	○○○○○○○○ 위탁운영 부적정		1				
9	농 정 과	○○○○○ ○○○○○ 지원사업 관리 부적정	1					
10	새 마을경 제 과 환 경 보 전 과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제한· 승인지역 용도변경 등 부적정	1					
11	산 림 축 산 과	군유림 대부계약 관련		1				
12	재 무 과 등 3 개 부 서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 관련	1					
13	새 마을경 제 과	건축신고(증축)처리 부적정	1					
14	새 마을경 제 과	건축물 안전관계규정 미비한 인·허가 처리 부적정		1				
15	미래전략사업추진단	○○○○○○○○○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 부적정		1				
16	미래전략사업추진단	○○○○○○○○○○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1				
17	환경보전과 등 4 개 부 서	공공기관 위수탁사업 추진 부적정	1		1	266,211		
18	미래전략사업추진단	○○○○○○○○○○○○○ 위(수)탁 사업비 승인 부적정	1				1	203,000

2. 처분요구일람표

1. 정원을 초과한 승진임용 부적정 (주의)
2. 근속승진자 퇴직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임용 부적정 (주의)
3. 공장설립 승인 부적정 (시정)
4. 일반용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소홀 (주의)
5. 장기계속용역 차수별 준공실적 미인정 부적정 (주의)
6. 민원처리 지연 및 관리·감독 소홀 (주의)
7. 공중보건의 관사운영비 예산집행 부적정 (주의)
8. ○○○○○○○○ 위탁운영 부적정 (주의)
9. ○○○○ ○○○○○○ 지원사업 관리 부적정 (시정).....
10.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용도변경 등 부적정 (시정)
11. 군유림 대부계약 관련 (주의)
12.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 관련 (시정)
13. 건축신고(증축)처리 부적정 (시정)
14. 건축물 안전관계규정 미비한 인·허가 처리 부적정 (주의)
15. ○○○○○○○○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 부적정 (주의)
16. ○○○○○○○○○○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주의)
17. 공공기관 위수탁사업 추진 부적정 (시정)
18. ○○○○○○○○○○○○ 위(수)탁 사업비 승인 부적정 (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정원을 초과한 승진임용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 2016년 7월 사이에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임용 등 인사업무를 처리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르면 지방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되,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영양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르면 영양군에 두는 운전7급의 정원은 4명, 사회복지8급의 정원은 최대 10명¹⁾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영양군에서는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직급별·직렬별 정원의 범위에서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승진 임용하여야 하고, 운전7급의 경우에는 최대 4명을, 사회복지8급의 경우에는 최대 10명을 초과하여 승진 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운전7급 정원초과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 1] 과 같이 2015. 7. 1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1) 사회복지8급 정원 10명 = 사회복지8급(단수) 9명 + 사회복지8급 또는 보건8급(복수) 1명

운전7급 결원으로 책정한 2명(6급승진후속1, 공로연수1)에 대하여 운전8급 2명을 승진 임용하였다.

[표 1] 운전7급 정원초과 승진임용 현황

승진직급	승진심사일별 승진인원 (현원/정원)		정원초과
	2015. 7.10.	2016. 6.29.	
운전7급	2명(5/4)	1명(5/4)	1명

그러나 당초 결원으로 책정한 공로연수 1명²⁾에 대하여는 2015. 4.10.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미 결원을 보충한 사항이었고, 위 7월 승진인사로 인해 운전7급 현원이 5명이 되어 정원 4명(+1)을 초과하게 되었다.

이후 2016. 6. 24. 운전6급 정원이 1명 증원되자 2016. 6. 29. 인사위원회를 통해 운전7급 1명을 승진 임용하고 그 후속인 운전7급은 이미 정원 1명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해야 하는데도 운전8급 1명을 또다시 승진 임용함으로써 2017. 2. 24. 감사일 현재까지 운전7급 현원을 정원과 대비하여 1명 초과·운용하고 있다.

2. 사회복지8급 정원초과

영양군에 둘 수 있는 사회복지8급은 최대 10명인데도 2014. 12. 29. 인사위원회를 통해 사회복지9급 7명을 8급으로 승진 임용하여 현원이 11명이 되면서 정원을 1명 초과하게 되었다.

그리고 2015. 10.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도 사회복지8급 현원이 정원을 이미 1명 초과하고 있는데도 7급 승진 후속 1명, 결원 1명 등 2명을 결원으로 책정하고는 2명을 승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12명이 되어 정원을 2명 초과하게 되었다.

이후 아래 [표 2]와 같이 2016. 1. 15.부터 2016. 6. 29.까지 3차례에 걸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이미 정원을 2명이나 초과하여 인사를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해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승진 임용함으로써 2016. 6. 29. 인사위원회

2) '운전○급 △△△'(2015. 4. 6. 공로연수, 2015. 6. 30. 정년퇴직)

이후에는 정원을 최대 5명까지 초과하게 되었고, 2017. 1. 19. 1명이 성주군으로 전출가면서 현원이 14명이 되어 2017. 2. 24. 감사일 현재까지 사회복지8급 현원을 정원과 대비하여 4명이나 초과하여 운용하고 있다.

[표 2] 사회복지8급 정원초과 승진임용 현황

승진직급	승진심사일별 승진인원 (현원/정원)						정원초과
	2014.12.29.	2015.10.30.	2016.01.15.	2016.05.30.	2016.06.29.	2017.01.09.	
사회복지8급	7명(11/10)	2명(12/10)	2명(14/10)	1명(14/10)	1명(15/10)	전출1(14/10)	4명

특히, 2015. 10. 30.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진 임용된 2명 중 1명과 2016. 1. 15. 인사위원회를 통해 승진 임용된 2명 등 총 3명은 8급 우대승진자의 7급 승진³⁾ 후속으로 이루어진 승진으로 우대승진자가 심사를 통해 승진하게 되면 우대승진된 직급에는 결원이 없는데도 승진 임용하였다.

그 결과 위 “1”과“2”를 종합해 볼 때 부적정한 인사 운용으로 인해 정원의 범위에서 정상적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승진할 수 없었던 운전7급 1명, 사회복지8급 4명 등 총 5명이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산정 및 승진 업무를 처리하시고, 관련 공무원 등에게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3)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우대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우대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되, 우대승진자가 승진하여 현원이 소멸할 경우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우대승진자가 심사를 통해 승진할 경우 증가된 것으로 간주했던 우대승진된 직급의 정원은 당초의 직급으로 환원되어 우대승진된 직급에는 결원이 없음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근속승진자 승진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임용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에서는 2014. 10. 31. ‘지방○○○○ △△△’가 명예퇴직을 하자 2014. 12.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을 ○○○○○○ 승진대상자로 결정하고 2015. 1. 1. 승진 임용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6급·7급·8급·9급의 정원을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정원을 통합·운영함에 따라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승진된 자가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직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엄격히 구분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근속승진을 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 된 직급의 정원은 증가된 것으로, 그 바로 하위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간주하되, 근속승진자가 승진하여 현원이 소멸할 경우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근속승진자가 퇴직할 경우 증가된 것으로 간주했던 근속승진 된 직급의

정원은 당초의 직급으로 환원되어 근속승진자 퇴직을 승진요인으로 책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영양군 총무과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2014. 10. 31. 6급 근속승진자인 ‘지방○○○○ △△△’가 명예퇴직을 하자 이를 승진요인으로 책정하고는 같은 해 12.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 ▲▲▲’을 승진대상자로 결정하고 2015. 1. 1. 지방간호주사로 승진 임용하였다.

[표] 근속승진자 퇴직에 따른 하위직급 승진임용 현황

승진심사일	인 사 요 인	승진직급	승진자	비고
2014.12.29.	○○○급 △△△(○급 근속) 명예퇴직*	○○○급	○○○급 조명숙**	부당승진

* △△△ 명예퇴직 : 2014. 10. 31. ** ▲▲▲ 승진임용 : 2015. 1. 1.

그 결과 부적정한 인사 운용으로 인하여 근속승진자 퇴직에 따라 증가된 것으로 간주했던 근속승진 된 직급의 정원을 당초의 직급으로 환원하고 정상적으로 승진인사가 이루어졌다면 승진할 수 없었던 ‘지방○○○○○ ▲▲▲’이 승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원 산정 및 승진 업무를 처리하시고, 관련 공무원 등에게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장설립 승인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 1] 과 같이 영양군 ○○면 ○리 산**-*번지 일원에 ‘○○○○○○○○(주) △△△’로부터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및 특정목적용 제제목제조업 업종으로 2015. 12. 21.공장신설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후 2015. 12. 30. 공장신설 승인을 통보하였다.

[표 1] 공장신설 승인 현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	공장 부지	공장건축면적		신청일	승인일
					제조	부대		
○○○○ ○○○○	△△△	○○면 ○리 산**-*	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 업 및 특정목적용제제목 제조업	22,365	1,550	100	15.12.21	15.12.30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르면 공장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인·허가등 또는 허가·신고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⁴⁾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공장설립 등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 인·허가 등의 의제 신청서, 타인 소유의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1)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인·허가 명세서 및 의제를 받으려는 인·허가등의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목적사업의 성격, 주변경관, 설치하려는 시설물의 배치 등을 고려할 때 전용하려는 산지의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되, 공장 및 건축물의 경우는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폐율에 따라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지역, 개발사업의 종류 및 범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은 사업계획 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 농림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7,500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는 사업의 승인 전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신청인은 공장신설 승인 시에는 법규에서 정한 신청서에 포함되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여야 하고, 허가부서에서는 관련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한 후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련 인·허가 부서에 협의 후 공장 입지여부가 가능한 경우에 승인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5. 12. 21. 영양군 ○○면 ○리 산***-*번지 일원 공장 설립(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목적용제제목제업) 승인신청서에 관련 인·허가에 대한 첨부서류 및 타인에 대한 토지 승낙서가 미첨부 되었는데도 보완요구도 아니하였다.

그리고는 같은 해 12. 23. 제출된 사업계획서만으로 공장신설승인신청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관련 부서인 ○○○○과에서 개발행위 허가대상임으로 허가여부는 관련 서류 제출 시 판단 가능하다는 의견을, ○○○○과에서는 건축물 건폐율 대비 공장용지 면적이 과다하여 공장용지 면적을 축소하고, 산지전용허가여부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고려하여 판단 가능하다는 의견을

각각 제출하였고,

○○○○과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에는 해당사업 승인 전에 협의기관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득하도록 하고, 제출된 사업계획서 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는데도 같은 해 12. 30. 승인⁵⁾하였다.

[표 2] 실무종합심의회 검토결과 일부 현황

관련부서	제출일자	검토의견	비고
○○○○과	‘15.12.29.	개발행위대상이며 허가여부는 관련서류 제출 시 판단가능	
○○○○과	‘15.12.29.	건축물 건폐율 과다 공장용지면적 축소, 산지전용허가여부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과	‘15.12.28.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일 경우 해당사업의 허가 전 협의기관에 협의사항이며 협의 시 영양군에 수질오염총량 할당을 득하여 함	

그 결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개별법의 의제 또는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채 공장설립이 승인 처리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 ① ‘○○○○○○○○(주)’ 공장신설 승인에 대하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조속히 이행토록 조치하시고,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승인 취소 등 조치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 ② 그리고 앞으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공장설립 승인 허가 업무를 처리토록하시기 바랍니다.

5) 해당부서에는 관련부서의 의견을 첨부한 사실로 조건부 승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에 대하여는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공장 설립 승인서를 발급”하도록 되어 있음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첨부한 것만으로 신청인에게 승인을 한 것이 아니고, 신청인에게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수행하여야 승인 조건이 충족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일반용역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소홀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467호, 2015. 7. 27.)에 따라 정보통신용역 적격심사 업무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19호, 2014. 7. 25.)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2016년 영양군 ○○○○○○ ○○○○○○ 용역 적격심사 소홀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 과 같이 2015. 11. 24. “2016년 영양군 ○○○○○○ ○○○○○○ 용역”을 공고하고 같은 해 12. 23. ‘△△△(주)’와 계약 체결하였다.

[표 1] “2016년 영양군 ○○○○○○ ○○○○○○ 용역” 계약 현황

입찰공고일	계약일	계약금액(천원)	계약상대자	용역기간
2015.11.24.	2015.12.23.	229,285	△△△(주)	2016. 1. 1.~12.31.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467호) 제6조제3항에 따르면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제표 또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 중 입찰참가자가 택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 적용 시에는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 경영분석” 자료를 적용하되 심사항목별 기준비율은 입찰공고 시 별도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단, 서류 미제출 또는 경영상태 평가결과 부(負)의 수치인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4조제3항 내지 제5항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심사상 첨부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 또는 확인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고 보완요구 기한까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정보통신용역은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기준 제12조에 따르면 이 세부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에 따르면 신용평가방법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한 신용평가등급만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 11. 30. 개찰하여 적격심사 1순위자인 ‘△△△(주)’의 적격심사를 하면서 같은 해 12. 4. 위 업체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서의 등급평가일은 입찰공고일 이후인 같은 해 12. 2. 인데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요구도 없이 부당하게 인정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2] 와 같이 당초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서로 평가하였을 경우 적격심사 통과 점수(88점)에 미달(84.75점)하는 부적격업체 ‘△△△(주)’와 같은 해 12. 23.

229,285천원 계약 체결하였다.

[표 2] 감사기간 중 ‘△△△(주)’ 적격심사 결과

구분	심사항목	배점 한도	부적정평가	정당 평가
합계		100	88.05	84.75
시공경험평가	이행실적	9	9	9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5	13.3	10.0
	기술인력 보유현황	3	2.5	2.5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비율	3	0	0
신인도		+11~△7	5.25	5.25
입찰가격		60	58	58
결격사유		△20	0	0

그러나 위 사실이 감사기간 중 지적되어 해당 업체에 보완요구를 하여 유효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재평가 결과 적격심사 통과 점수를 충족하여 계약상대자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 ○○○○○○○○○○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심사 소홀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3] 과 같이 2015. 3. 5. “○○ ○○○○○○○○○○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을 입찰 공고하고 같은 해 3. 26. ‘△△△△△’과 계약 체결하였다.

[표 3] “○○ ○○○○○○○○○○ 설치공사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현황

입찰공고일	계약일	계약금액(천원)	계약상대자	용역기간
2015. 3. 5.	2015. 3.26.	162,312	△△△△△	2015. 3.30.~2017. 3.16.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14-119호, 2014. 7. 25.) 제4조에 따르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입찰자로부터 당해 용역 수행능력과 입찰가격 등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추정가격 30억원 미만 용역의 경우에는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5조에 따르면 적격업체 평가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다만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

심사 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 대해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심사서류가 누락되었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기준 “4. 2억원 미만 당해용역 수행능력 배점한도 세부내역 아-(1), (2)”에 따르면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신용평가등급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7조에 따르면 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입찰공고, 적격업체 평가기준 등의 열람, 평가자료 요구, 재평가 등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회계예규 또는 지침·기준 등 계약·입찰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 제14호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능력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제한최저가 입찰을 한 경우에는 입찰자가 투찰한 가격 점수와 기타 평가항목이 만점을 받는 경우를 전제로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를 통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확인하고,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토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적격심사 대상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한 신용평가등급만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적격심사 포기서 인정 부적정

그런데 2015. 3. 12. 개찰하여 적격심사 1순위자 ‘△△△△△△△(주)’가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같은 해 3. 17. 자체심사결과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였는데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는 증명서류 등의 검토나 확인 없이 적격심사 포기서를 그대로 인정하여 적격심사 서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위 업체에 대하여 아무런 제재조치도 아니하였다.

2. 적격심사 소홀

그리고 2015. 3. 23. 적격심사 2순위자 ‘△△△△△’의 적격심사를 하면서는 위 업체가 제출한 신용등급평가확인서는 등급유효기간이 2014. 6. 30. 이므로 유효하지 않는데도 확인을 소홀히 하여 보완요구도 없이 부당하게 인정하여 평가하였다.

그 결과 아래 [표 4] 와 같이 당초 제출된 신용평가등급서로 평가하였을 경우 적격심사 통과 점수(95점)에 미달(94.94점)하는 위 업체와 같은 해 3 .26. 162,312천원 계약 체결하였다.

[표 4] 감사기간 중 ‘△△△△△’ 적격심사 결과

구분	심사항목		배점 한도	부적정평가	정당 평가
합계			100	95.06	94.94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3년간 용역수행금액	수집 · 운반		3	3	3
	중간처리		3	3	3
	최종처리		2	2	2
당해용역수행능력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 · 운반능력		2	2	2
	중 간 처 리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2	2	2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 용역처리장까지의 거리	2	2	2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	-	-
		순환골재 품질인증	4	3.8	3.8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최종처리용량		2	2	2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10	9.46	9.34
입찰가격			70	65.8	65.8
신인도			+0.42~△6	0	0
결격여부			△30	0	0

그러나 위 사실이 감사기간 중 지적되어 해당 업체에 보완요구를 하여 유효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받았으며 재평가 결과 적격심사 통과 점수를 충족하여 계약상대자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앞으로는 경영상태를 신용등급평가확인서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평가토록 하시고, 적격심사대상자가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하여 적격심사통과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인정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하도록 되어 있고,

적격심사대상자의 이행실적은 계약일자와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 완료된 시점이 최근 3년 이내로서 입찰공고에 명시한 유사용역을 이행한 금액 또는 규모·양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4장제8절 “2”나 “3”에 따르면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⁶⁾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인수한 경우에 그 기성부분을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적격심사대상자의 제출 서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 하여야 하고, 이행실적이 장기계속계약인 경우에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차수별 준공실적은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2014. 10. 31. 적격심사대상 1순위 ‘(주)△△△△△△△’는 계약기간이 2013. 3. 1. 부터 2018. 2. 28.까지로 되어 있는 이행실적증명서⁷⁾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용역수행기간이 5년이므로 장기계속계약인 것을 알 수 있었고, 인정 가능한 완료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서류 보완을 요구 하여 입찰공고일 기준 완료된 차수별 준공실적은 인정했어야 하는데도

보완서류 요구 및 이행실적증명서 발행기관 및 규정 해석부서에 문의 없이 전체 용역이 완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행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감사기간 중 이행실적증명서 발행기관인 “○○○○”에 확인한 결과 해당 용역은 ○○○ 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하는 용역으로 정해진 과업량이 없이 관련 시설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차수별 계약하고 있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6) 행정자치부 국민신문고 민원회신(1AA-1702-091770)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누계실적금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차수별(연차별) 준공실적을 용역실적으로 인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나, 연도별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아니한 매월 기성실적을 용역실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다.

7) “○○○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통합운영관리 민간위탁용역(○○폐수처리장)”-○○○○(2014.10.28. 발행)

용역에 해당하고,

1차분 계약은 2013. 3. 1.부터 2014. 2. 28.까지를 용역기간으로 하고, 계약금액 806,308천원 중 위 업체의 지분율(51%)에 해당하는 411,217천원은 완료된 실적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아래 [표 2] 와 같이 1차분 용역실적을 인정하여 평가할 경우 위 업체는 적격심사 통과점수(95점)을 통과(95.56점)하는 적격업체에 해당하였다.

[표 2] 감사기간 중 ‘△△△△△△△’ 적격심사 결과

구분	심사항목	배점 한도	부적정평가	정당 평가
합계		100	89.56	95.56
시공경험평가	이행실적	15	9	15
경영상태	재무비율	15	15	15
신인도		+14~△7	0	0
입찰가격		30	65.56	65.56
결격사유		△20	0	0

그 결과 위 부서의 이행실적 서류 보완 소홀 및 차수별 완료 실적 미확인 등으로 인정 가능한 이행실적이 부당하게 인정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낙찰자인 ‘(주)△△△△△△△’는 수주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등 계약상대자 선정 및 계약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앞으로는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이행실적 평가를 철저히 하여 적격심사 및 계약상대자 선정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민원처리 지연 및 관리·감독 소홀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르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련 없는 공과금 등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내지 제17조에 따르면 군수는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도록 되어 있고, 질의·건의·고충·기타 민원의 처리에 관하여는 각각 그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군수는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민원 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수는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부서에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적정하게 확인·관리하여 민원의 신속·공정·적법한 처리가 담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감사기간 중 확인 결과 아래 [표] 와 같이 위 부서에서는 민원사무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에 대하여 확인·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4. 7월부터 2017. 2. 24. 감사일 현재까지 총 41건 민원이 처리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민원 처리 지연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1일 ~ 5일	6일 ~ 10일	11일 ~ 50일	50일 이상	비 고
총 계	41	27	6	7	1	
2014.7.1.~12.31.	8	6	2	-	-	최대 104일 민원처리 지연
2015.1.1.~12.31.	17	13	1	3	-	
2016.1.1.~12.31.	14	7	2	4	1	
2017.1.1.~2.24.	2	1	1	-	-	

그 결과 각종 민원 처리 업무가 정해진 기일 내에 처리되지 않고 최대 104일까지 지연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할 민원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앞으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중보건의 관사운영비 예산집행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 ○ ○
내 용

영양군 ○○○에서는 「지방재정법」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중보건의 관사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 및 제4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55조에 따르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급·3급 관사 중 시설관리사만 한정하여 보일러 운영비·전기요금·전화요금·수도요금·공동관리비를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세출예산 집행은 관련 법령에 따라 경비 집행의 적법성·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시설관리사를 제외한 관사 입주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보일러 운영비·전기요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일반회계 예산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공중보건의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 영양군 ○○○읍 ○○○○○길 *번지 관사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7. 2. 24. 감사일 현재까지 관사 입주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보일러 운영비(난방비)·전

기요금 총 16,377,130원을 관사 입주자들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지 않고 일반회계 예산(공공운영비)으로 부담하게 지원하였다.

[표] 공중보건의 관사운영비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원)

년 도	주 소	사용관사수	관사운영비 예산집행 내용		
			계	보일러운영비 (난방비)	전기요금
			16,377,130	14,075,600	2,301,530
2014	영양읍 ○○○○○길 *	6	3,107,580	2,514,600	592,980
2015	영양읍 ○○○○○길 *	6	5,645,480	4,755,200	890,280
2016	영양읍 ○○○○○길 *	6	6,356,300	5,585,800	770,500
2017	영양읍 ○○○○○길 *	6	1,267,770	1,220,000	47,770

그 결과 관사 입주자에게 부담되어야 할 난방비 등 총 16,377,130원이 세출 예산에서 부담하게 지출되어 낭비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앞으로는 시설관리사가 아닌 관사 입주자 등에게 난방비 등을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위탁운영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2010년부터 ○○면 ○○리 ***번지 일원(30,544㎡)에 57억원(국비 10, 군비 47)을 투입하여 농가에 고품질 고추육묘를 공급하기 위하여 첨단온실 9,332㎡(육묘장 및 작업장)과 부대시설 602㎡ 등 건물 9,934㎡의 “○○○○○○○○○○”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1. 위탁관리자 선정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르면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나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한하여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행정재산을 위탁하여 관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수한 장비 및 기술

등이 필요하여 수의계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입찰을 통하여 위탁관리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5. 1. 21.부터 ‘○○○○○○○○’에 위탁하여 운영하여 오던 “○○○○○○○○”에 대하여 2016. 6. 29. ‘○○○○○○ ○○○ ○○○○’(대표 △△△, 이하 ‘○○○ ○○○○’라 한다)로부터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제안서를 검토하면서

‘○○○ ○○○○’는 2015. 10. 12.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으로 회사의 경영성과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실적이 없고 사업계획서에도 샐러드용 채소묘 생산 및 성채 재배 계획만 작성되어 있어 ○○○○○○○을 운용할 만한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있는지 의심되는데도 양채류 재배를 통한 지역농가 기술보급 및 계약재배 등이 이루어질 경우 포기상추, 허브류 등이 지역의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이유로 입찰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 ○○○○○ 민간위탁 운영계획’을 군수 결재를 받아 2016. 8. 5. ‘○○○ ○○○○’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2017. 8. 4.까지 사용허가 하였다.

그 결과 ○○○○○○○○ 운용을 위한 특수한 기술 및 능력이 의심되는 자가 수의계약 혜택을 부여받는 등 위탁관리자 선정이 부적정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2. 위탁관리 공유재산 목적외 사용 부적정

영양군과 ‘○○○○○○○○’가 체결한 「공유재산 관리위탁 계약서」 제1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목적은 고추를 비롯한 농작물 육묘 및 새로운 소득품목 발굴을 위한 시험재배 등으로 하고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시설 및 부지는 사용목적외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위 부서에서는 위탁관리한 공유재산이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에서 2017. 1. 3. 에너지효율화 사업⁸⁾

과 고추육묘의 사업목적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서는, 2017. 2월(날짜 미상) ‘○○○ ○○○○’ ‘대표 △△△’이 설립한 또다른 ‘○○○○○○○ (주)○○○○○○’과 1년간 채소류 위탁재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관리·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아니 하였다.

그 결과 계약자만을 변경하여 ‘○○○ ○○○○(대표 △△△)’는 생산하고 있던 샐러드용 채소묘 생산 및 성채 재배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감사기간 중 현지 확인 결과 결구상추를 생산하고 있는 등 공유재산인 고추공정육묘장이 특정 농업회사법인에게 목적외로 사용될 수 있게 하는 특혜를 부여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앞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유재산 위탁 관리자 선정 및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8) ○○○○○○○○의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지열 냉·난방비를 지원(국비 포함)하는 사업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육묘장에 대하여 지원하는 사업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 지원사업 관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아래 [표] 와 같이 지역 농특산물의 부가가치 증대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2014. 4. 3. “2014년 ○○○○○○○○○ 지원 보조사업” 대상자로 ‘○○○○○○○(주) (대표자 △△△)’에게 총 사업비 960백만원을 보조하기로 결정하고, 발효식품(된장) 가공공장 증설에 따른 가공시설, 창고시설 등 건축부문에 336백만원, 전처리설비 및 포장라인 등 기계·설비비로 336백만원을 교부하였다.

[표] 사업자 선정 내역

사 업 자	사 업 비 (천원)					사 업 내 용
	계	국비 (50%)	도비 (6%)	군비 (14%)	자부담 (30%)	
○○○○○○○ ○○○○○○○ 대표 △△△	960,000	480,000	57,600	134,400	288,000	가공시설, 냉동창고, 제품보관실, 자재 실 등 부대시설, 교반·저장탱크 등 제 조·가공시설, 충전시설, 포장시설 등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9조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담보 등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청장에게 승인 신청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건립된 건축물과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제공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위 보조사업자가 2015. 7월(날짜미상)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2015. 3. 12. ‘△△△△△△△△’에서 보조시설물에 대하여 384백만원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이 등재되지 않은 건물등기부 등본(2015. 1. 29. 발급)을 제출하였는데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여 정당한 것으로 정산처리 하였다.

또한 위 보조사업자는 이후로도 2015. 8. 13. ‘△△△△△△△△△’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고 나머지 대출금으로는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780백만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였고,

위 부서에서는 2015. 9. 18.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여 ‘△△△△△△(주)’에 같은 해 11. 13.까지 근저당권 설정해지 및 담보제공 관련 자금의 필요성 등 경위서를 제출토록 4차에 걸쳐 공문으로 통보한 후 위 보조사업자로부터 경위서를 제출 받아 같은 해 12. 30. 보조시설 담보제공 승인권자인 경상북도지사에게 담보제공 승인 요청 하였다.

그러나 2016. 1. 5. ‘경상북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에서는 “도지사의 승인없이 임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을 이유로 담보제공 불승인 통보하면서 근저당권 해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조속한 시일 내 제출하도록 통보⁹⁾ 하였다.

그리고는 위 부서에서는 보조시설물의 근저당권 해지 등의 적정 조치는 아니하고 방치하다가 5개월이 경과된 같은 해 6. 8.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조사업 담보제공 사후승인 또는 정상화 기간유예 가능여부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를

9) FTA농식품유통대책단-114(2016. 1. 5.)

하여 같은 해 6. 10.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담보제공 사후승인 또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보조금 회수를 명령함에 있어 일정기간 유예를 두는 문제는 담보제공 승인권자인 경상북도지사와 협의하여 판단할 사항’이라는 회신¹⁰⁾을 받았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8개월이 경과된 2017. 2. 2.에서야 영양군수에게 “△△△△(주) 미승인 담보제공 건 처리계획”을 보고하면서 “경상북도의 사후승인을 받기가 어렵고, 보조금 환수 시 사업체 부도가 자명하며, 미승인 담보제공에 대한 이익분 산정 등으로 영양군과 행정소송 등 법적 분쟁이 예상됨으로 한시적 제재 유예를 통하여 사업체 정상화를 유도토록 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는 의견으로 결재를 득한 후 2017. 10. 30.까지 미승인 담보제공 사업장 시정명령 이행기간 연장을 통보하였다.

그 결과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을 담보설정 하는 등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고서도 보조금 정산 또는 회수 조치 없이 시정 유예하는 특혜를 제공받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근저당을 해지토록 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보조사업시설물이 담보로 제공되는 등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게 운영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 농촌산업과-2294(2016. 6. 10.)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용도변경 등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영양군 ○○○○○과(전 ○○○○○과)에서는 아래 [표] 와 같이 2014. 10. 24. 다가구주택으로 사용 승인된 ‘△△△’ 소유 ○○면 ○○리 ***-※번지 건축물에 대하여 2015. 2. 23.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건축물 표시 변경신청서가 접수되어 ○○○○○과와 ○○○○○과에 협의하고 같은 해 2. 24. 제조업소로 건축물 표시 변경신고 수리하였다.

그리고 2015.10.23. ‘△△△’ 소유 ○○면 ○○리 ***-※번지 외 1필지 제2종근린 생활시설(제조업소) 증축신고 건이 접수되어 지역개발과 등과 협의를 거쳐 같은 해 10. 28. 건축 신고수리하고 2016. 6. 17. 사용 승인하였다.

[표]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건축 인허가 개요

소재지	면적(㎡)	인허가일	現 입주업체	업종	입주일	비고
○○면 ○○리 ***-※	81.28	2015.2.24	○○○○○○○○○	즉석판매제조가공 (약초·과일엑기스)	2016.2.	공장설립 제한지역
○○면 ○○리 ***-※외 1필지	84	2016.6.17	○○○○○○○	식품제조가공 (오미자엑기스)	2016.8.	공장설립 승인지역

1.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용도 변경 부적정

「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구역의 상류지역 윗하거리 10km이내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¹⁾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르면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km를 초과하는 지역과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km 초과 7km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 등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호 별표1¹²⁾에 따르면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를 곡물 도정업,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등 오폐수의 발생량이 적은 9개 제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제한지역에서는 9개 제조업과 승인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상수원의 수질보호를 위해 공장설립이 제한되며, 이들 제한지역에서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용도변경은 면밀히 검토하여 수도법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가 2015. 2. 23. 제출한 ○○면 ○○리 ***-※번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시설) 표시변경신청에 대하여 ○○○○과와 ○○○○과에 협의하면서 위 지번은 수비상수원보호구역(2006년 영양군 고시) 취수구 상류 약 2km 지역에 해당하여 ‘공장설립 제한지역’에 해당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제한지역<수도법>)’으로 확인되는데도 수도법(공장설립 제한구역) 저촉여부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환경보건과 상수도담당에는 협의하지 아니하고, 같은 과 ○○○담당에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용량 검토 및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여부’만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

12)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에는 곡물 도정업, 떡류 제조업, 빵류 제조업,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장류 제조업, 커피 가공업, 차류 가공업, 인삼제품 제조업

협의요청 하였다.

그 결과 같은 해 2. 24. 당초 사무소 133.05m²를 사무소 51.77m²와 제조업소 81.28m²으로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처리되는 등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제한 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제조업소가 입지할 수 있게 되었다.

2.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 증축 부적정

「수도법」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상수원보호 구역의 상류지역 유하거리 10km이내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르면 공장설립 승인지역의 범위는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km를 초과하는 지역과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4km 초과 7km이내인 지역으로서 「하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천 등으로부터 500m 이내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호에 따르면 취수시설 상류 유하거리 7km 초과 지역의 공장설립제한지역에 설립하는 공장의 승인요건으로 1일 오수 발생량이 10m³ 미만인 공장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르면 공장설립제한지역에 공장을 설립한 자는 오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을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오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 그 밖에 오염사고에 대비한 우회 배수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해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km를 초과 하는 지역은 공장설립제한지역이면서 공장설립 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승인을

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지역에서의 「건축법」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의 건축신고 건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수도법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이 2015. 10. 23. 제출한 ○○면 ○○리 ***-*번지 외 1필지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시설) 증축신고에 대하여 지역개발과 등 3개 부서에 협의하면서 위 제조시설은 오수 발생량이 10m³ 미만인 제조업소로 공장설립 승인대상에 해당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상수원보호기타(상수원상류 공장설립 승인지역<수도법>)’으로 확인되는데도

수도법(공장설립 승인구역) 저촉여부에 대하여 관련 부서인 ○○○○과 ○○○ 담당과는 협의하지 않고 같은 과 하수도담당에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용량 적합 여부’만 협의 요청하였다.

그 결과 위 제조시설에 같은 해 10. 28. 신고필증이 교부되고 2016. 6. 17. 사용 승인되어 공장설립 승인지역 건축주에게 부가되어야 할 완충저류시설 설치와 오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 등 승인 및 준수사항이 검토되지 아니한 제조업소가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에 입지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어 건축 인허가된 ○○면 ○○리 ***-*번지 외 1필지에 소재한 제조시설에 대하여 완충저류시설 설치 등 승인 및 준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는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하여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 제한 지역 내 제조시설 신고수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군유림 대부계약 관련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에서는 ○○면 ○○○ ***번지에 거주하는 ‘△△△’에게 같은 리 산 **-*번지 및 산 **-*번지 등 2필지(8,423㎡)에 대하여 2013. 1월(날짜 미상)부터 2015. 12. 31.까지 국·공유재산 대부(연장)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에 따르면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였거나 전대하거나,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및 제99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을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 또는 전대한 당초 대부계약자와는 대부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무단으로 점유한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공유재산(군유림)에 대한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상태,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전대행위로 인한 대부계약 해지된 전력이 있는 자와 대부계약을 체결할 시 전대행위 등을 면밀히 확인·검토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위 부서에서는 2015. 5. 12. ○○○○과장(‘지방○○사무관 △△△’)의 지시로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실태조사 결과 ○○면 ○○리 산 **~*, 산**~*번지는 2013. 1월(날짜 미상) ‘△△△’에게 이미 대부계약 된 임야인데도 인지하지도 못한 채 ‘▲▲▲’이 위 지번 2필지 및 인근 산 **~**번지 임야(7,994㎡)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실만을 적발하였다.

또한 당초 대부받은 ‘△△△’이 직접 관리하지 않은 채 2013년경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83백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전대하였고, 또다시 ‘▲▲▲’은 ‘▽▽▽’에게 2013년 3백만원, 2014년 4백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재전대 계약을 체결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 과 같이 2015. 6. 17. 같은 면 ○○리 산 **~*, 산**~*번지의 국·공유재산을 불법으로 재전대한 ‘△△△’과의 대부계약 해지절차는 하지 않은 채 실제로 위 2필지에 대하여는 ‘▲▲▲’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도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2필지를 포함한 총 3필지로 계산하여 2,114,050원을 부과하였다.

[표 1] 변상금 부과내역

(단위 : ㎡, 원)

산림소재지			지적	무단점용 및 전대면적	산출내역	부과금액	무단점유자
면	리	지번					
○○	○○	산**~*	6,490	6,490	16,237㎡ ×2,170원×10/1,000×120/100×5년	2,114.050	▲▲▲ (영양군 ○○면 ○○○길 **~*)
○○	○○	산**~*	1,753	1,753			
○○	○○	산**~**	7,994	7,994			

또한 아래 [표 2] 와 같이 ‘△△△’과의 ○○리 산**~*, 산**~*번지 임야 대부계약이 만료(2015. 12. 31.)되지 않았는데도 위 같은 2필지에 대하여 2015. 10. 8. 요원리 산**~*번지 균유지 무단점유자 인 ‘▲▲▲’과 위 산**~*번지, 산**~*번지 및 산**~*번지를 2018. 12. 31.까지 사용하는 대부계약을 하였고, 2016. 3. 8.에서야 ‘▲▲▲’이 불법으로 ‘▽▽▽’에게 허가없이 전대한 사실을 인지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였다.

[표 2] 무단점유자(‘▲▲▲’) 대부 내역

(단위 : ㎡)

산림소재지			지적	대부면적	용도	대부기간	피대부자
면	리	지번					
○○	○○	산**~*	6,490	6,490	농경용	2015. 7. ~ 12. 31	▲▲▲
○○	○○	산**~*	1,753	1,753	농경용	2015. 7. ~ 12. 31	
○○	○○	산**~**	9,485	7,994	농경용	2015. 7. ~ 2018. 12. 31.	

그 결과 매년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 건전하고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할 공유재산(균유림)이 (재)전대되는 등 소홀히 관리 되었고, 불법행위자들은 공유재산 (재)전대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앞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유재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국·공유지 무단 점·사용 관련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과, ○○○○○과, ○○○○○○과
내 용	

영양군에서는 ○○면 ○○리 ○○○의 국유지 건설부 소유 37필지(60,311㎡), 건설교통부 소유 4필지(3,142), 재무부 소유 2필지(1,415㎡) 및 군유지 37필지(43,988㎡) 등 국·공유지 총 91필지(145,428㎡)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르면 공용·공공용 재산의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72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제83조에 따르면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무단 점유"라 한다)를 한 자에 대하여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재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9조 및 「영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르면 공유재산 관리상태,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와 운영에 만전을 기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조 및 제99조에 따르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의 원래 상태를 변경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0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원래 상태대로 반환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국·공유재산이 무단 점·사용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대부 받은 재산을 허가 없이 재임대 한 사실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적법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양군 ○○과, ○○○○과, ○○과, ○○○○○과(전 ○○○○과)에서는 약 30년 전부터 ○○면 ○○리 ○○○ 전체 필지 208필지(266,066㎡) 중 국공유지 91필지(145,428㎡)를 무단으로 점·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민원 등으로 인지하고도 매년 실태조사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다가

2014. 12. 2. ~ 12. 8.까지 5일간 영양군의회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면 ○○리 ○○○ 일원 국·공유재산이 무단점용되어 사용되고 있거나 허가 없이 재임대 되는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런데 영양군 재무과에서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및 불법 재임대 사실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관리부서인 ○○○○과, ○○과, ○○○○과(전 ○○○○과)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지도 않은 채

“2014. 12. 18.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점유, 재임대 등 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변상금 부과, 대부계약 해지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 하겠다”는 형식적인 조치 결과를 기획감사실을 거쳐 군의회에 제출하였다.

특히 감사기간 중 확인 결과 ○○면 ○○리 ***번지 건설부(現 국토교통부) 소유 하천부지의 경우 같은 면 같은 리에 거주 하는 ‘△△△’ 등이 전체 면적 9,818m² 중 지도상(출처:DAUM) 대부분(면적 미산정)의 면적을 무단 점유하여 축사 등으로 불법 건축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러한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결과 ○○면 ○○리 ○○○ 일원에 위치하는 국·공유지 91필지에 대한 관리 부서의 업무 소홀 및 방치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고, 무단점유자들이 불법 점유 또는 전대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국유재산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점용·전대 사용되고 있는 수비면 발리리 용수곡 일원 국·공유지 91필지에 대하여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자에게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등 관련 법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시고, 앞으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공유 재산 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건축신고(증축)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전 ○○○○○과)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건축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산업 등 시설군을 하위업무시설군인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를 득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을 무단용도변경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4조에 따르면 85㎡이내의 증축을 할 경우 건축신고를 득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신고 없이 무단증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9조에 따라 시정명령 하도록 되어 있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1조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건축가 신고 없이 산업 등 시설군을 근린생활시설군으로 용도변경하거나 85㎡이내의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와 같이 2016. 7. 5. 건축주 ‘△△△’가 ○○읍 ○○리 ***-*번지 소재 농업용창고 45㎡ 증축을 위한 건축신고를 같은 해 7. 7. 신고 수리하고, 같은 해 7. 25. 사용승인 하였다.

[표] 건축신고(증축) 처리 현황

위 치	용도지역	용도 및 규모	건축주	신고처리 (사용승인)	비 고
영양읍 ○○리 ***-*	보전관리	·기존)주택및농업창고 3동 156.04㎡ (창고 34.16㎡ 사찰사용) ·증축)창고 45㎡ (사전 건축중 신고)	△△△	2016.7.7 (2016.7.25)	• 기존건축물 사찰로 무단용도변경 사용함에도 행정조치 미 이행 • 무단으로 공사 중 건축신고 신청에도 행정조치 미 이행

그러나 증축신청 당시 건축주 ‘△△△’는 이미 기존 농업용창고 34.16㎡를 종교집회장(사찰)으로 무단용도변경 하여 사용하고 있었고, 건축신고 신청한 창고 45㎡는 건축신고 신청 전인 2016. 5월경(날짜 미상)부터 공사 착수하여 이미 무단으로 증축(기초공사 완료 후 철골트러스 골조공사 진행) 중에 있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업무담당자가 2016. 7. 6. 건축신고신청에 따른 현장출장시 기존 건축물이 무단용도변경 되어 사용되고 있고, 증축신고 한 부분이 사전에 무단으로 건축 중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시정통보 및 고발 등 행정조치도 없이 건축신고 수리 하였다.

그 결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용도변경·증축 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및 벌금 미부과, 시정명령 시 발생하는

철거비용 미발생 등의 부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행정행위의 공정성·실효성을 훼손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무단으로 용도변경 사용되고 있는 위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신고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한 후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 하시고, 앞으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무단용도 변경 건축물에 대하여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이행하여 행정행위의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건축물 안전관리 규정 미비한 인·허가 처리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양군 ○○○○○과(전 ○○○○○과)에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1. 3층 이상 건축물 구조의 안전 확인 미이행

「건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르면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 받아 착공 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축주로부터 구조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받아 고정하중 등 안전을 확인하여 인·허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건축주 ‘△△△’이 ○○읍 ○○리 ***-*번지 건축물 3층에 제2종근린생활시설 사무소 79.87㎡를 증축하는 건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주에게 구조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하여 구조안전을 확인한 후 인·허가 하여야 하는데도 건축주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보완 또는 시정요구 없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고는 2015. 8. 7. 건축신고 수리하

였고, 같은 해 9. 25. 사용승인처리 하는 등 총 3건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여야 할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확인도 아니하고 건축인·허가 하였다.

[표 1] 구조안전 확인 미 이행 현황

허가(신고) 번호	대지위치	용 도	건축주	허가일 (사용승인)	규 모	위 반 내 용	비 고
건축신고 2015-**	○○읍 ○○리 ***-*	제2종근생 (사무소)	△△△	2015. 8. 7 (2015. 9.25)	3층 증축 79.87㎡	구조안전 확인 미 이행	
건축신고 2014-**	○○읍 ○○리 ***	단독주택	△△△	2014.10. 7 (2014.11. 4)	3층 증축 65.95㎡	구조안전 확인 미 이행	
건축협의 2014-**	○○읍 ○○리 *-**	문화및집회 시설	△△△△	2014.12.11 (2015. 3.16)	4층 증축 66.4㎡	구조안전 확인 미 이행	

그 결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게 3층 이상 건축물의 증축이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확인 및 검토도 없이 인·허가 되어 사용자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2. 3층 이상 건축물 내화구조 미설치

「건축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3층 이상의 건축물은 주요구조부를 13)내화구조로 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는 내화구조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부서에서는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내화구조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인·허가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건축주 ‘△△△’가 ○○면 ○○리 ***-*번지 3층에 다가구주택 29.74㎡를 증축하면서 내화구조에 미달되는 경량철골조로 건축신고 하였는데도 보완이나 시정요구도 없이 2014. 10. 8. 건축신고 수리하고, 같은 해 10. 24. 사용승인 하는 등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설치되지 아니한 총 3건의 3층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인·허가 하였다.

13)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벽체 : 철근콘크리트조 10cm 이상, 벽돌조 19cm 이상 등
 - 기둥 :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을 5cm 이상 콘크리트로 덮은 것 등
 - 보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등
- ※ 기타 한국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표 2]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미 설치 현황

허가(신고) 번호	대지위치	용 도	건축주	허가일 (사용승인)	규 모	위 반 내 용	비 고
건축신고 2014-**	○○면 ○○리 ***-*	다가주택	△△△	2014.10. 8 (2014.10.24)	3층 증축 21.74㎡	내화구조 미설치 (경량철골조 설치)	
건축신고 2015-**	○○읍 ○○리 ***-*	제2종근생 (사무소)	△△△	2015. 8. 7 (2015. 9.25)	3층 증축 79.87㎡	내화구조 미설치 (경량철골조 설치)	[표 1] 구조안전 확인 미이행 포함
건축협의 2014-**	○○읍 ○○리 *-**	문화및집회 시설	△△△△	2014.12.11 (2015. 3.16)	4층 증축 66.4㎡	내화구조 미설치 (경량철골조 설치)	[표 1] 구조안전 확인 미이행 포함

그 결과 최근 잦은 지진과 대형화재의 발생으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과는 상충되게 안전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이 인·허가 되어 사용자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앞으로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층 이상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인하여 인·허가 업무를 처리토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조성사업 건설사업관리 용역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양군 ○○○○○○○○○○에서는 2016. 12. 9. ‘○○○○○○○(주) △△△’과 공사계약(4,759백만원)을 하고, 같은 해 12. 16. 착공하여 2019. 1.12. 준공예정으로 “○○○○○○○○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해당 건축물은 연구시설로 바닥면적 합이 1,838.96㎡이며 “준다중이용시설”에 해당된다.

그리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7. 2. 3. ‘(주)○○○○○ 건축사사무소 외1개사’와 용역 계약(675백만원)을 하고, 같은 해 2. 7. 착수하여 2019. 2. 6. 완료예정으로 건설사업관리 용역(감독권한 대행)을 추진 중에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5조(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에 따르면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100m이상의 교량을 포함한 도로공사, 연면적 5,000㎡ 이상의 공용청사 등에 한하여 감독권한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다중이용 건축물 외의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은 “준다중이용 건축물”로

분류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에 따르면 “준다중이용 건축물 건축공사”는 건축사보(건축공사 업무 2년 이상 종사자, 초급이상) 1명 이상을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 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 1명 이상을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르면 준다중이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공사감리업무를의 대가는 실비정액가산식에 따라서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발주청은 의무적 건설사업관리(감독 권한대행) 대상이 아닌 건설사업의 사업관리방식을 사업특성 및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용역 수행에 따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 조성사업”은 준다중이용시설 신축공사로 「건축법」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2년 이상 건축감독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한 건축사보 1명과 공종별 필요한 기술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용역비를 680백만원으로 계상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감독 권한대행을 적용하여 용역비를 783백만원으로 과다 산정하고 675백만원(낙찰율 86.2%)으로 계약하였다.

그 결과 총 사업비 89백만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앞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 및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사업의 사업관리방식 결정을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용역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양군 ○○○○○○○○○에서는 2016. 12. 19. ‘(주) ○○○○○○○○ △△△’와
용역 계약(578백만원) 하고, 같은 해 12. 20. 착수하여 2018. 3. 14. 준공예정으로
“○○○○○○○○○○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주요 과업은 도시계획시설결정 51%, 현황측량 등 조사 8.5%, 인허가 관련 행정
계획 등 20.8%, 기반시설 설계 19.7% 등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한 행정계획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발주사업 내용과 비교하여 인정할 수 있는 실적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영양군에서는 2016. 11. 18. “○○○○○○○○○○ 조성사업 인허가 및 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를 공고 하면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 기준」의 참여기술자 실적을 인정할 수 있는 해당전문분야(실적 100%인정)를 도시 기본계획,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으로 포괄 인정하는 것이 적정한데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시설에 대한 기본계획, 조성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한함”으로 과도하게 제한하였다.

그 결과 사업수행능력평가(P.Q)에 용역수행 실적이 있는 2개사(‘△△△△△△△’, ‘△△△△△△△’)만이 참여 하고, 1순위 평가 점수(93.1점)를 받은 ‘(주)△△△△△△△△△’가 최종 낙찰 받게 되는 등 용역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앞으로는 「지방계약법령」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발주사업 내용과 비교하여 인정할 수 있는 실적의 범위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공공기관 위수탁사업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과, ○○○○과, ○○○○○○과, ○○○○○○○○○
내 용	

환경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하수도시설 설치 등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영양군에서는 「하수도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보조사업 대행 위·수탁협약을 맺어 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수행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31조,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지침)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자치부예규)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 받도록 되어 있고,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영양군과 환경관리공단 등 공공기관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에 따르면 협약에 따른 회계처리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 관련법령을 준용하도록 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정산을 실시하고 발생 이자를 반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영양군 ○○○○○과, ○○○○과, ○○○○○○○과, ○○○○○○○○○ 등 4개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회계연도가 끝나면 대행 사업기관으로 부터 정산서를 제출받아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반납 받아야 하는데도 정산검사를 미 실시하거나 실시하고도 발생한 이자 266,211천원을 반납받지 않고 있다.

[표] 위수탁사업 미반납 이자 현황

(단위 : 천원)

부 서	사 업 명	회계연도	정산 유무	미반납 이자	비고
4개과	10건			266,211	
○○○○○과	○○○○ 소규모농촌용수개발사업 등 4건	2016	○	25,983	
○○○○과	영양군 영양 ○○○○○○○○ 증설사업	2013 ~ 2016	×	205,205	
○○○○○○과	영양군 ○○○○○○관리시스템	2016	×	2,095	
○○○○○○○○○○	○○○○○○ 종합정비사업 등 4건	2016	○	32,928	

그 결과 보조금 정산검사가 미 실시 되거나 반납되어야 할 보조금 이자 266,211천원이 반납되지 않고 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정산하지 않은 회계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 시고, 미반납되고 있는 보조금 이자 266,211천원은 회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 으로는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및 보조금 정산에 철 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위(수)탁 사업비 승인 부적정
소 관 청 영양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영양군 ○○○○○○○○○(전 ○○○○과)에서는 “○○○○○○○○○○”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2014. 3. 21. ‘○○○○○○○○ 청송·영양지사장’과 “○○○ 소재지종합정비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2017. 2. 24. 감사일 현재까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서 정한 ‘별표 5 농어촌정비사업의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요율 기준’에 따르면 공사감리의 요율 대상액은 순공사비와 자재대의 합계금액으로 하고, 사업관리의 요율 대상액은 순공사비, 자재대, 용지매수보상비의 합계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4. 3. 21. 위수탁사업인 “○○ ○○○○○○○종합정비사업”의 사업비를 승인하면서 지역역량강화사업비는 공사감리비와 사업관리비 적용대상이 아닌데도 37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기 수립한 기본계획비는 협약에서 제외 되었는데도 60백만원을 계상하여 사업비 승인 하였다.

또한 2014. 3. 21. “○○○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서도 위와 동일하게 사업비를

승인하여 공사감리비와 사업관리비 16백만원과 기 수립한 기본계획비 90백만원을
과다 승인 하였다.

그 결과 위·수탁 협약에 따른 총 사업비 203백만원을 과다 승인하는 등 사업
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영양군수는

과다 계상된 총 사업비 203,000천원은 감액토록 하시고, 앞으로는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비 계상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